

#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3월 10일, 장문혁 의원
- 회부일자 : 2020년 0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3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문혁 의원)

#### 가. 제안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나.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군수의 학교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 노력을 규정(안 제4조)

다.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안 제5조)

라.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6~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호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학교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 실시 노력을 규정  
안 제5조에서는 효행 우수자등에 대한 표창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지원사업의 범위를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 효행교육 실시를 군수의 임무로 하고,  
그에 따른 효행장려 사업 수행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독려하고자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입법례로는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이 있으며,  
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9조(준용)** 효행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